

# ‘재벌집 막내아들’은 공인일까?

글 양재규 | 언론법 전문 변호사  
eselltree92@gmail.com



광고주가 직접 물어보고 법적 전문가의 고견을 들어보는 **Law119**

양재규 언론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광고, 홍보, 마케팅 등 기업 업무 전반에서 꼭 알고 있어야 할 법률 상식에 대해 알아보자.

누가 공인이며, 공인의 사생활은 어디까지 공개할 수 있는가?

언론법 강의를 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질문이다.

질문의 소재를 기업 관련으로 바꿔본다면, ‘재벌집 막내아들도 공인인가’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런데 관계는 연결되어 있고 관심의 범위는 확장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구체적 사안이 아닌 일반적 수준에서 선 넘는 사생활 공개인지, 아닌지 명쾌한 답변을 주기는 쉽지 않다.

단순할 수 있지만 언론 대응 시 실무상 참고할 만한 몇 가지 판단기준을 제시해볼까 한다.



**Q** 기업의 오너 내지 대표는 법적으로 ‘공인(公人)’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오너나 대표의 가족은 어떻게 취급되고 있나? 오너나 대표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언론에 자주 기사화되기도 하는데 오너나 대표의 가족 역시 공인으로 취급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A** 잠깐만 생각해봐도 언론에 자주 등장했던 여러 공인 가족들의 이름과 얼굴이 떠오른다. A 장관의 딸, B정치인의 부인, C연예인의 아버지 등으로 대표적인 공인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의 가족이 폭언·폭행, 갑질과 같은 각종 부적절한 처신이나 범법 행위 등으로 기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인도 예외는 아니어서 기업 오너나 대표의 배우자, 자녀 관련 불미스러운 일들이 뉴스가 되었고 앞으로도 될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기업 오너나 대표의 가족 역시 공인이라는 생각마저 하게 한다. 하지만 단언컨대, 일종의 ‘착시효과’다. 공인의 가족은 공인이 아니다. 법원은 유명 연예인의 결혼 상대에 관해 “◇◇◇과 결혼할 사이라고 해서 공적 인물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1가합 8399). 연인 혹은 가족이라고 해서 공인과 똑같이 취급할 하등의 근거는 없다. 공인의 가족 관련 이슈에 대응하고자 할 때 가장 기본으로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원칙이다. 다만, 이 원칙에는 매우 다양한 예외 사

유가 존재한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기업인 가족 관련 이슈들은 대체로 이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일 수 있다.

먼저 당사자 본인이 기업 조직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다. 부정적인 시선도 존재하지만 창업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친인척을 경영에 참여시키는 이른바 ‘가족경영’은 흔히 있는 일이다. 그러니 논란의 중심에 선 오너나 대표의 가족들 역시 본사 임원이라든가 계열사 대표와 같이 기업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라면 언론에서 ○○○대표의 부인, △△ 회장의 아들이라 명명하는 것과는 별개로, 자기 자신의 조직 내 직위 내지 위치로 인해 공인으로 취급되거나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말하자면, 재벌집 막내아들이라고 해서 곧장 공인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후계자가 되는 순간 공인이 되는 셈이다.

다음으로 오너나 대표의 공적 권한의 남용과 특정 가족 구성원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경우다. 공인을 일반인과 다르게 취급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인의 사회적 영향력, 다시 말해 공인이 행사하는 권력 때문이다. 공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종류의 힘이 있다. 그 힘이 정치적인 것이면 정치권력

이 되고, 문화적인 것이면 문화권력이 되며, 경제적 인 것이면 경제권력이 되는 것이다. 법원이 여러 사건에서 기업의 오너나 대표를 공인으로 보고 그에 관한 보도를 정당화하는 근거 또한 이들이 행사하고 있는 경제권력에 있다.

이런 측면에서 기업인의 경제권력이 적정하게 행사되고 있는지를 언론은 항상 감시할 수 있고, 이러한 목적과 방향에 부합하는 기사들은 비록 그것이 명예훼손 내지 사생활 침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정당화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언론이 기업인의 경제권력이 적정하게 행사되고 있는지를 다루다 보면 해당 권력의 수혜자라 할 수 있는 당사자들의 신원이라든가 결과적 측면이 불가피하게 노출될 수 있고, 이것을 법



\*출처 : SLL, 래몽래인, 재벌집막내아들문화산업전문회사



적으로 문제삼기란 쉽지 않다. 물론 주된 목적은 경제권력의 적정한 행사 여부에 있으니 관련 사항의 공개는 최소한도에서 그쳐야 한다. 또 권력 내지 사회적 영향력의 남용과 관련 없는, 단순한 사적 사항을 단지 공인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공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오너나 대표 스스로 사회적 주목을 받고 있는 경우다. 기업의 오너나 대표들 중에는 SNS를 적극 이용하거나 대중매체에 스스로를 자주 노출시킴으로써 ‘인싸’가 되는 이들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가족 입장에서 사생활 침해를 문제삼기가 불리해진다. 사생활 침해의 대전제는 해당 공개가 스스로의 의사가 아닌, 타인의 의사에 의해 무단공개되었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❷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심의실장을 맡고 있는 양재규 변호사는 풍부한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언론보도, 인격권 분야에서 언론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 광고, 홍보, 마케팅 등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법적 문제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soziro01@kaa.or.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질문 중 주제를 선정, [Law119]에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